

< 기타소득 >

1. 기타소득의 의의

이자 · 배당 · 사업 · 근로 · 연금, 퇴직, 양도 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법에 열거된 소득

2. 기타소득의 범위

구분	범위
양도 · 대여의 대가	① 저작자등 외의자(저작권 · 저작인접권을 상속 · 증여 받거나 양도받은 자를 말함)가 받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대가 ② 영화필름 등, 이와 유사한 자산 · 권리의 양도 · 대여 · 사용대가 ③ 광업권 등 무체재산권의 양도 · 대여 대가* ④ 물품(유가증권 포함) · 장소의 일시적 대여 대가 ⑤ 지역권 · 지상권의 설정 · 대여 대가 ⑥ 개당 · 점당 · 조당 양도가액이 6,000만원 이상인 법에 정한 서화 · 골동품 등의 양도소득 단,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함
소득구분시 주의해야 할 소득	① 위약금 · 배상금으로 받은 것 · 계약의 해약 · 위약으로 인한 것 : 기타소득 · 위 외의 것(교통사고배상금) : 과세 × ② 소기업 · 소상공인 공제부금에서 발생하는 소득 : 이자소득 (2016.01.1. 이후 가입분부터는 퇴직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) ③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금액 · 연금형태로 수령시 : 연금소득 · 연금외수령시 :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, 그 밖의 경우는 기타소득 → 무조건 분리과세(15%) ④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· 근무기간 중 행사시 : 근로소득 · 그 외 행사시 : 기타소득
기타	위 외에 법에 열거된 것(유실물 습득으로 받는 보상금 등)

* 무체재산권 중 영업권 양도대가의 소득구분

구분	소득
사업용고정자산(토지 · 건물 · 부동산에 관한 권리)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	양도소득
위 외의 경우 영업권(영업권 단독 양도, 기계장치와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)	기타소득

3. 비과세 기타소득

- ① ·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받는 보훈급여금 · 학습보조비
 ·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받는 정착금 · 보조금
- ② 국가보안법에 따라 받는 상금
- ③ 국가 ·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

- ④ 발명진흥법에 따는 직무발명으로 받는 다음의 보상금
 - ㉠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
 - ㉡ 대학의 교직원이 소속된 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받는 보상금
- ⑤ 국군포로가 받는 정착금
- ⑥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서화 · 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
- ⑦ 서화 · 골동품을 박물관 ·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

4. 기타소득금액의 계산

(1) 계산구조

$\text{기타소득금액} = \text{총수입금액}(\text{기타소득} - \text{비과세소득} - \text{분리과세소득}) - \text{필요경비}$
--

(2) 필요경비 : 입증액을 공제하되, 다음은 법에 정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

구분	내용
최소한 80%를 경비로 인정하는 것	① 광업권 등 무체재산권의 양도 · 대여 대가 ② 주택임주지체상금 ③ 일시적인 문예창작소득 ④ 다음의 인적용역 일시적 제공 대가 ㉠ 고용관계 없이 받는 강연료 ㉡ 라디오 · TV등 해설 · 계몽 · 연기심사 등 대가 ㉢ 변호사 · 회계사 · 세무사 등 전문자격사의 지식등 활용 대가 ⑤ 공익법인 상금,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⑥ 지역권 · 지상권 설정 · 대여 대가 ⑦ 종교인이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(2016년부터 시행)
서화 · 골동품 등 양도소득	최소한 80%(보유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90%)
기타	①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: 구입 · 적중된 승마투표권등의 단위투표금액 합계액 ②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 : 당첨 직전에 투입한 금액

5. 과세최저한

- ① 승마투표권 · 승자투표권 · 소싸움경기투표권 · 체육진흥투표권 환급금
 : 권면 표시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경우
- ②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 : 매 건마다 500만원 미만인 경우
- ③ 위 외의 기타소득금액 :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 단,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기타소득금액은 과세최저한을 적용하지 않고 금액에 관계없이 과세함

6. 수입시기

구분	수입시기
① 원칙	지급을 받은날
②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된 기타소득	해당 사업연도 결산확정일
③ 광업권 등 무체재산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*	· 대금청산일 · 인도일 ·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 · 단,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자산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였으나 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대금지급일
④ 계약금이 위약금 · 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의 기타소득	계약의 위약 · 해약이 확정된 날
⑤ 연금계좌에서 수령한 소득 중 연금외수령소득	연금외수령한 날

* 광업권 등 무체재산권을 대여하고 받는 금품의 수입시기 : 지급을 받은 날

7. 과세방법

< 1단계 기타소득의 구분 >

구분	내용	원천징수세율
무조건 분리과세 (A)	①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한 기타소득	15%
	② 서화 · 골동품 양도소득	20%
	③ 복권당첨금	20% (3억 초과분은 30%)
	④ 승마투표권 · 승자투표권 · 소싸움경기투표권 · 체육진흥투표권의 환급금	
	⑤ 슬롯머신 등 당첨금품	
	⑥ 위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	
무조건 종합과세	① 뇌물 · 알선수재 ·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(B) ② 계약의 위약 등으로 위약금 · 배상금 중 계약금의 위약금등 대체액(C)	원천징수 대상 아님
조건부과세 (D)	위 외의 소득	20%

< 2단계 조건부 과세대상의 종합과세 여부 판단 >

[경우1](C)기타소득금액+(D)기타소득금액 = 합계액 ≤ 300만원인 경우 : 분리과세 선택가능
[경우2](C)기타소득금액+(D)기타소득금액 = 합계액 > 300만원인 경우 : 종합과세*

*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총액을 종합과세함